

목 차

○ 제 1 장	인삼제품의 분류	1
가.	인삼제품의 종류	3
나.	HS 코드 및 관세율	4
○ 제 2 장	시장현황	5
○ 제 3 장	유통현황	9
○ 제 4 장	수입관련 규제기관	13
가.	식품 규제기관	15
나.	의약품 규제기관	18
○ 제 5 장	인삼 관련 식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21
가.	두바이 통관절차	23
나.	아부다비 통관절차	31
○ 제 6 장	인삼 관련 의약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41
가.	의약품 승인	43
나.	수입허가	44
다.	수입면허 요건	45
○ 제 7 장	UAE 인삼시장 특성	47
○ 제 8 장	UAE 진출 시 유의사항	51

제 1 장

인삼제품의 분류

가. 인삼제품의 종류

나. HS 코드 및 관세율

인삼제품의 분류

가. 인삼제품의 종류

UAE의 대표적인 인삼제품들은 크게 식품과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 식품: 뿌리삼, 음료, 차, 엑기스
- 의약품: 타블렛, 캡슐

일반적으로 엑기스 제품은 인삼농도에 따라 보건국의 검토에 의해 식품 혹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국의 성분 분석과 까다로운 등록절차를 거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품의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들은 대부분 타블렛, 캡슐 형태의 의약품 형태로 수입을 희망한다.

UAE 시장에서 인삼제품은 소비자들이 효능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도입기에 있으며, 음료나 차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크게 자극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삼 근, 음료, 엑기스 등의 식품 형태로 수입하기를 희망하는 유통기업도 있었지만 절차가 간편해서라기보다는 경쟁사와의 제품 포트폴리오 차별화가 주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 HS 코드 및 관세율

UAE 내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삼제품은 일반적으로 하기의 HS Code에 속하며 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제품의 성격에 따라 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인삼보조식품의 대부분은 HS Code 21069094에 속하며 주로 타블렛, 캡슐, 젤리 등 전형적인 의약품 형태이다.

[UAE 주요 인삼제품 분류]

HS Code	제품명	영문품명	관세율
12112000	인삼근	Ginseng roots	5%
13021920	인삼추출물	Ginseng extract	
21069094	식물, 과당, 꿀 등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제조된 조제 식료품 및 보조식료품	Food supplements based on extracts from plants fruit concentrates, honey, fructose, etc.	

* 출처 : 두바이 세관



제 2 장

시장현황

2

시장현황

UAE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류(Vitamins), 영양/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토닉/드링크류(Tonics and Bottled Nutritive Drinks), 소아용 영양보충제(Paediatric Vitamins and Dietary Supplements)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품목별 매출 실적은 아래와 같다.

[UAE 건강보조식품 매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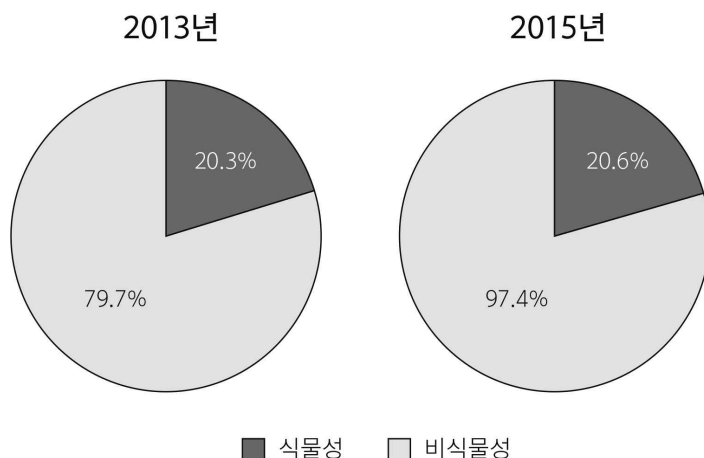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디르함)

품목	2013	2014	2015	CAGR('13~'15)
비타민	99.6	110.3	122.3	10.8%
영양/식이보충제	61.1	67.9	75.1	10.9%
토닉/드링크	12.2	13.5	15.0	10.9%
소아용 영양보충제	6.7	7.5	8.3	11.3%
총 매출	179.5	199.1	220.8	10.9%

* 출처 : 유로모니터

UAE의 전체 건강보조식품 시장성장률은 10.9%로 전체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영양/식이보충제는 대부분의 인삼제품이 속하는 항목이며 최근 동향을 보면 영양/식이보충제의 매출성장률은 건강보조식품 전체의 매출성장률인 10.9%와 동일한 수준이다. 영양/식이보충제 항목은 다시 식물성과 비식물성으로 분류되고 최근 식물성 및 비식물성 매출비율은 아래와 같다.

[UAE 영양/식이보충제 매출현황]



* 출처 : 유로모니터

대부분의 인삼제품은 식물성 영양/식이보충제로 분류되며 UAE 내 시장규모는 약 20만 디르함 규모로 집계된다. 이는 UAE 건강보조식품 전체시장의 0.3%이며, 그 중 식물성 건강보조식품은 시장의 1.6%로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3년간 연평균 성장률 41.4%로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제 3 장

유통현황

3

유통현황

UAE의 건강보조식품 및 인삼제품 유통경로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 온라인 쇼핑몰

SOUQ는 UAE의 온라인 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서 다양한 제품을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구매되는 품목으로는 가전제품과 게임용품, 의류 등으로 꼽히는 반면, 건강식품을 포함한 식품류는 판매 비중이 낮다.

■ 드러그스토어 및 약국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약국과 잡화점이 결합된 형태의 드러그스토어는 건강식품 구매에 가장 선호되는 유통채널이다. 건강보조식품의 약 80%가 약국 및 오프라인 드러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 편의점

식품과 잡화, 공산품 등을 판매하며 주로 도심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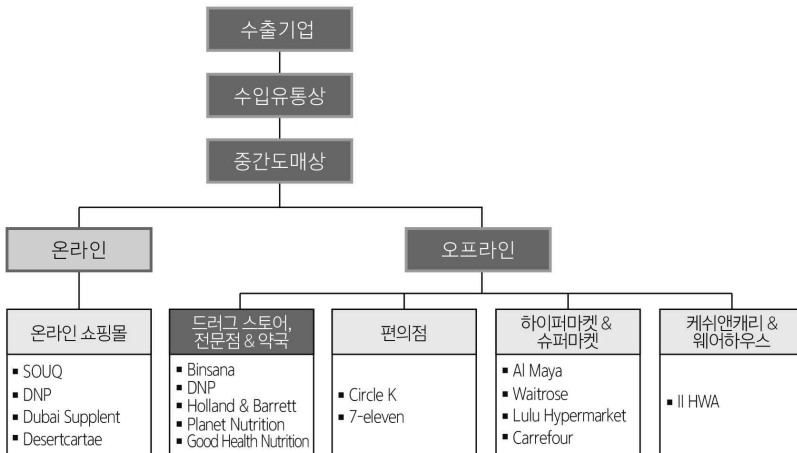
■ 하이퍼마켓 & 슈퍼마켓

잡화류 외의 가전제품과 같은 공산품도 판매하며, 가격이 저렴한 소매점 또는 소매 체인점이다.

■ 캐시앤캐리 & 웨어하우스

식자재 도매 판매점으로 식자재 및 부자재를 구매하는 식당들이 주 고객이다.

[UAE 건강보조식품 주요 유통경로]





제 4 장

수입관련 규제기관

- 가. 식품 규제기관
- 나. 의약품 규제기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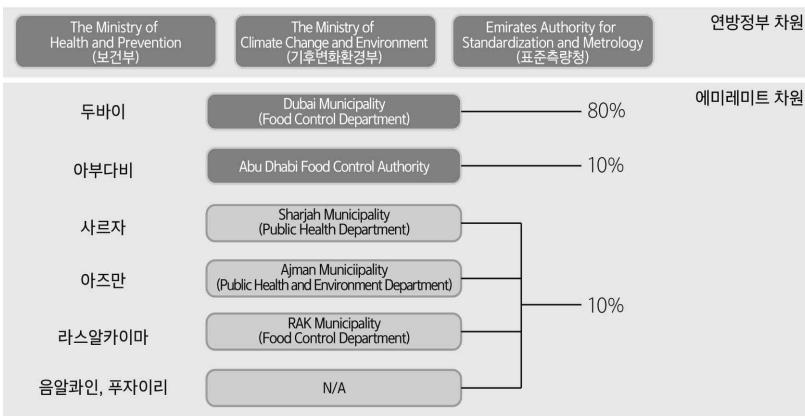
수입관련 규제기관

가. 식품 규제기관

인삼을 포함한 식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제기관은 크게 2가지이다.

-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기관: 전체적인 규정을 총괄
- 에미리트 차원의 각 지자체 식품관리국: 해당 에미리트의 세부 규정 관리

[UAE 식품 수입 관련 기관]



* 출처 : 두바이 세관

1) 연방정부 차원 규제기관

■ 기후변화환경부(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UAE 연방정부 차원의 식품관련 최고 규제기관으로 2006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로 개설된 후 환경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둔 UAE 정책과 맞물려 이후 기후변화환경부로 발전했다.

환경 관련 모든 문제를 주요 과제로 하며 기후변화, 수자원관리 등 큰 틀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하위기관을 관장한다. UAE 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할랄인증서 승인 및 발급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삼제품 수출 시 중요한 기관이다.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UAE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관련 최고 규제기관으로 국무부와의 기술적, 물리적, 협력 분야에서 보건 정책을 실행하며, 보건 부문의 민간부문과 협력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식품 및 의약품 관련 법규의 제정 및 정책 입안 역할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삼제품 수입에 있어 큰 영향을 준다. 인삼성분이 들어간 타블렛이나 캡슐 같은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

■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hodology)

표준측량청은 UAE 단일 규격기준 및 식품관련 연방 표준규격을 제정하고 운영한다. EQM(Emirates Quality Mark) 및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UAE에 수입 및 유통되는 제품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UAE 표준측량청의 강제 인증이다.

또한 표준측량청은 2014년에 도입된 할랄마크 제도(National Halal Mark)의 관할 기관으로서 할랄식품의 연방 표준규격을 제정한다.

2) 에미리트 차원 규제기관

■ 각 에미리트 정부는 역내 관할권을 가지고 세부규정 관리 및 운영

해당 에미리트 역내로 반입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식품의 분류, 서류 및 화물 검사, 샘플 채취와 실험실 검사 등 식품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에미리트별로 별도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제 인삼류 수입은 수요가 충분하고 유통망과 물류시설이 완비된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여타 에미리트에서는 작은 시장규모, 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UAE 전체 수입의 80% 이상이 두바이 세관에서, 약 10%가 아부다비 세관에서 통관된다.

나. 의약품 규제기관

UAE 의약품 관련 정책은 연방정부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에서 주관하며, 두바이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아부다비 보건국(Healthy Authority Abu Dhabi) 등이 각 에미리트의 지역정책 수립 및 집행 업무를 하고 있다.

1) 연방정부 차원 규제기관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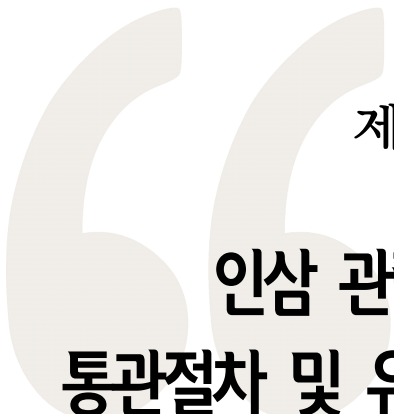
보건부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 차원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앙 통치기구인 동시에 나머지 에미리트의 의료 제도를 규제한다.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내 주 담당부서인 의약품 관리부(The Pharmaceutical & Medical Control Department)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인증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보건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인삼성분이 들어간 타블렛이나 캡슐 같은 제품의 수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에미리트 차원 규제기관

각 에미리트 보건청은 각 에미리트의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관리와 규제를 담당하고 의약품 오용과 악영향의 사례를 보고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제 5 장

인삼 관련 식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가. 두바이 통관절차
나. 아부다비 통관 절차

5

인삼 관련 식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가. 두바이 통관절차

두바이의 인삼 관련 수입식품 등록 및 통관절차는 크게 2가지로 수입 전 절차와 수입 후 절차로 나뉜다.

- 수입 전 절차 : 수입허가 신청
- 수입 후 절차 : 화물 도착부터 화물 인도까지

[두바이 식품 검역 절차]



* 출처 : 두바이 상공회의소

1) 수입 전 절차

두바이시청(Dubai Municipality)의 식품관리부(Food Control Department)는 식품 수입과 재수출 요건(Import & Re-export Requirements for Food Stuff)을 구체화해놓았다.

두바이시청의 식품 수입 지침에 따르면, 식품 수입 전에 두바이 시청 홈페이지 기업 등록, 라벨 승인신청 및 취득, 수입식품 등록, 소비적합성 시험 등 아래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회원가입

두바이시청 홈페이지(<http://www.dm.gov.ae>)에 접속하여 기업 상세 정보를 기업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작성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FIRS 등록

FIRS(Food Import Request System)은 두바이시청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품 수입 관리 시스템으로 컨테이너 검사부터 반출까지 통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회사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사서함(P.O. Box),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두바이 내 회사 식품창고의 상세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제출하여 FIRS를 활성화시킨다.

■ 식품라벨 승인 취득

기본적으로 수입식품에는 아랍어 라벨이 필히 부착되어야 하며 FIRS를 통해 라벨 승인 요청 전자신청서를 제출하여 통관 전에 승인을 취득하여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거절 및 지연 사태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라벨 필수 기재사항, 제품 샘플, 라벨 이미지 제출 여부 확인)

인삼 관련 식품의 라벨에는 필수적으로 하기 내용이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스티커의 형태의 아랍어 라벨도 가능하다.

- 브랜드 명
- 상품명(간단한 상품 묘사)
- 식품 원료(함량에 따른 내림차순)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제조사명, 포장회사,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 명
- 순 중량
- 원산지
- 상품 바코드
- 제품번호(Lot)
- 저장방법의 특이사항
- 과민성 질환 유발 가능한 원재료 명(함유 시)

■ 수입식품 등록

수입 전 FIRS 상에 온라인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인삼제품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라인상으로 완성된 식품 라벨(Label) 이미지를 제출해야 한다.

■ 소비 적합성 시험

수입 전 두바이중앙식품시험소(Dubai Central Food Laboratory) 또는 국제 인정 시험소에서 수입 대상 식품의 소비적합성 성적서 취득이 권고된다. 성적서가 없을 시 화물 도착 후 샘플을 채취하여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화물 반출이 보류된다.

2) 수입 후 절차

FIRS 승인 획득 후 두바이로 반입되는 화물은 검역소에서 아래 절차를 완료해야만 수입업체에 인도가 가능하다. 15,000디르함의 보증금이 납부되어야 하며 모든 수입 거래가 종료되면 보증금은 반환된다. 이전 수입 건에 대한 보류나 위반사항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신규 화물이 억류 될 수 있다.

■ 서류심사

- a. 세관신고서 혹은 선하증권
- b.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
- c. 원산지국 발행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C. 위생증명서

[illegible]

d. 패킹리스트

	* Bengali, Nepali, Hindi, Marathi, Gujarati, English * Importing, Exporting, Forwarding, Shipping, Logistics * Warehousing, Pallet, Truck, Container, Insurance, Insurance * Freight, Customs, Bond, Bill of Lading, Invoice, Certificate * 24/7 E-mail : vav@vavcargo.com			
	PAKING NO. : 047 E / PL / AYK / 03 - 2010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MATERIAL	Qty (PCS)	Nett. Wt (KGS)
LOOSE	WOODEN STANG RACK 242x43x5	WOOD	1	
	SMALL COMMODO ZOW RED	WOOD	1	
	BD PANEL	WOOD	2	
	POURUM 120x120x20	WOOD	12	
	POURUM 120x120x30	WOOD	8	
	FRUIT BASKET CERAMIC	TERACOTTA	1	
	FRUIT PLATE CERAMIC	TERACOTTA	1	
	NAPKING RING SET 6	Natural material	1	
	TEACUP BURNER 15x5.5x5	TERACOTTA	1	
	ADAMT MINI STATUE	WOOD	1	
	NAPKING CANDLE HOLDER	TERACOTTA	1	
	JEWELS BOX 15x5x5	WOOD	1	
	MARBLE PHOTO FRAME 18x18	MARBLE	1	
	MARBLE CANDLE PLATE 20x20	MARBLE	1	
	MARBLE ROUND CONTAINER GREEN	MARBLE	1	
	MARBLE ROUND CONTAINER CREAM	MARBLE	1	
	MARBLE CANDLE HOLDER	MARBLE	1	
	MARBLE SOAP DISH	MARBLE	2	
	MARBLE SOAP DISH	MARBLE	1	
	MARBLE CANDLE HOLDER	MARBLE	1	
	MARBLE BALL 2.7	MARBLE	1	
	ROUND EGG BALL D.8	TERACOTTA	1	
	OVAL EGG BALL	TERACOTTA	1	
	LBD PHOTO FRAME	TERACOTTA	1	
	BAMBOO BASKIN PHOTO FRAME	Natural material	1	
	BAMBOO DUST BIN	Natural material	1	
	MARBLE CANDLE PLATE 17x13	MARBLE	2	
	MARBLE EGG CUP	MARBLE	1	
	PHOTO FRAME PAKS 30x30x5	TERACOTTA	1	
	VASE BOTTLE BATTAN BLATED D. 16x20	TERACOTTA	1	
	VASE RATTI MANGGAR LEAVES RED 14x20	TERACOTTA	1	
	VASE RATTAN BLATED 23x15x30	TERACOTTA	1	
	VASE BAMBOO WHITE WASHI 21x14x40	TERACOTTA	1	
	VASE RT 20CM	TERACOTTA	1	
	BOTTLE CROCODILE BLACK 9x4x30	TERACOTTA	1	
	BOTTLE CROCODILE SILVER 9x4x30	TERACOTTA	1	
	BOTTLE CROCODILE GOLD 9x4x30	TERACOTTA	1	
	BOTTLE CROCODILE BLACK 9x4x30	TERACOTTA	1	
	BOTTLE CROCODILE GOLD 9x4x30	TERACOTTA	1	
	BOTTLE CROCODILE BLACK 9x4x30	TERACOTTA	1	

e. 할랄증명서

MS 1500		No Siri: Serial No.:	771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ISLAMIC DEVELOPMENT DEPARTMENT OF MALAYSIA			
<i>Sijil Pengesahan</i>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HALAL			
Yang dikeluarkan/diedarkan oleh: Manufactured/distributed by:			
Telah memenuhi peraturan HALAL mengikut Hukum Syarak Have complied with the HALAL requirements according to Islamic Law			
		 ZAINAL ABIDIN BIN SA'AD	
No. Ruj. JAKIM/(S)/(22.00)/482/3/ Ref. No. 1 024-12/2010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Jp. Kemas Pengarah Islamic Development	

f. 기타 증명서(유기농)

	هيئة الإمارات للمواصفات والمقاييس 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شهادة مطابقة CERTIFICATE OF CONFORMITY	
Certificate Number: Issue Date: Valid Until: Issued To:	17-07-4143-E17-44-003203 09-July-2018 08-July-2018 White Grass Agriculture	رقم الشهادة: تاريخ الإصدار: مستحقة الانتهاء: أصدرت لـ:
Plot No.35 Al Fays P.O. Box 25248, Al Khawanej, Dubai, UAE		
Product Category:	Organic Crop Production/ Farm	تصنيف المنتج:
	مزرعة / حقل عضوي لإنتاج المحاصيل	محاصيل
Product Name:	Vegetables/Fruit/Dates	اسم المنتج:
Product Details:	See Schedule Of Certification	تفاصيل المنتج:
	انظر جدول التقييمات	المنتجات
Product is registered under the 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ECAS) based on compliance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المنتجات مسجلة في نظام التقييمات الإماراتي (ECAS) بناءً على مطابقتها للمتطلبات التالية:	
Ministerial Resolution No.84/2012, IAE/SGS/OC AC GL32-2008 CAC/2199, Emirates Organic Foods Certification Scheme	Ministerial Resolution No.84/2012, IAE/SGS/OC AC GL32-2008 CAC/2199, Emirates Organic Foods Certification Scheme	
		
مهيئة مبنية على إقرار هيئة الإمارات للمواصفات والمقاييس Notified Body by Emirate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		

■ 컨테이너검사

두바이 세관은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금지된 위험물질 반입을 막고, 검사 및 세관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사능 스캔 시스템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제품검사

인삼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식품은 도착 즉시 육안 검사를 진행하며, 식품 성분표시 및 유통기한, 돈육 함유여부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 수입식품의 정밀시험검사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 라벨검사

FIRS상의 신청된 라벨의 필수적인 내용이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스티커의 형태의 아랍어 라벨도 가능하다.

■ 샘플검사

FIRS상의 위험도 분류에 따라 수입식품은 무작위 샘플채취 및 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신제품이나 기존에 수입되지 않은 식품은 철저한 실험실 분석의 대상이며 식품 유형, 브랜드 및 원산지에 따라 샘플링 빈도가 결정된다.

■ 화물 인도

서류심사, 컨테이너검사, 제품검사, 라벨감사, 샘플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 할 경우 화물은 수입업체에 인도된다.

수입업체는 화물의 인도를 위해 FIRS상의 지원서와 진행상황 변화 및 피드백을 주시하고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생증명서, 할랄증명서 미구비, 컨테이너 검사 상태 불량, 식품 훼손, 신청회사가 과거 위반사례가 있거나 유효한 식품수입 자격이 없을 경우 화물은 억류 되거나 반송처리 될 수 있다.

나. 아부다비 통관절차

1) 수입 후 절차

Abu Dhabi Food Control Authority의 Food Importers Guide에 따르면 식품은 위생 위험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3등급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식품 위험도 분류]

위험도	범위
고위험 식품	육류, 닭고기 및 수산물, 우유, 요거트 및 치즈, 아이스크림, 달걀 및 버터, 우유와 계란을 함유한 냉동 패이스트리 및 베이커리 제품, 유아용 식품, 특별규정식, 말린 견과나 견과로 만든 플레이크, 코코넛, 참깨, 티하니 및 땅콩버터, 자른 포장채소, 증류한 저산성 식품
중위험 식품	생수, 탄산음료, 주스 및 농축액, 신선과일, 냉동야채 및 과일, 코코아 및 초콜릿, 비스킷 및 사탕, 향신료 및 건조스프, 이스트 및 박테리아 배양물, 커피크림, 휘핑크림, 잼 및 젤리, 쌀, 밀가루와 전분, 튀김 및 조식용 시리얼, 산성식품
저위험 식품	생커피 및 차, 설탕, 시럽 및 꿀, 탄산음료 농축액, 식품첨가물 및 향료 추출물, 기름, 지방, 마가린, 견과일 및 포장야채, 곡물 및 콩, 파스타, 스파게티, 및 쿠스쿠스, 말린 허브, 소금 및 식초, 알코올 음료 및 희석 주류

* 출처 : 아부다비 식품관리국

통관 시 각 수입식품의 위생검사 난이도는 아래와 같이 녹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로 분류되며 항목에 맞는 위생검사 절차가 적용된다.

[식품 검사절차 분류]

절차	정의
녹색절차	위생서류 검토 후 통관종료
황색절차	위생서류 검토 및 화물 검사 후 통관종료
적색절차	위생서류 검토, 화물 검사 및 표본추출 실험실 분석 후 통관종료

* 출처 : 아부다비 식품관리국

식품 위험도 별 위생검사절차에 따른 식품화물검사의 수준과 빈도는 아래와 같다.

[식품 위험도 분류]

	적색청차 빈도	황색청차 빈도	녹색청차 빈도
고위험 식품	80~100%	0~10%	0~10%
중위험 식품	15~25%	15~25%	50~70%
저위험 식품	5~10%	0~5%	85~90%

* 출처 : 아부다비 식품관리국

따라서 육류 같은 식품위생이 중요시 되는 고위험 식품의 경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적색절차의 빈도가 80~100%이며 식물 추출물 같은 비교적 부패의 위험이 적은 저위험 식품은 위생서류만 검토하는 경우가 85~90%로 나타난다.

UAE에 유통되는 인삼제품은 주로 엑기스 및 추출물로서 대부분의 경우 중위험 혹은 저위험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녹색절차 적용대상으로서 서류만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초 수출 혹은 상황에 따라 적색절차 적용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 서류준비

[통관 시 제출 서류]

연번	필요서류 영문 명	해석
1	Health of Certificate	원산지국 관할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2	Temperature Records	냉장 및 냉동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과정 중 온도기록
3	Halal/Slaughtering Certificate	육류나 육가공품의 경우 할랄인증서
4	Packing List	제품의 종류 별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수량과 컨테이너 적재일자 표기 된 패키리스트
5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6	Importing Permission or Commercial License	수입업체의 사업면허
7	Bil of Entry or Delivery Order on Bill of Lading	세관신고서 또는 선하증권
8	-	기타 추가적으로 식품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서류와 증명서
9	-	라벨에 영양이나 건강 관련표기를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예:오가닉 식품 등)

* 출처 : 아부다비 식품관리국

■ 위생검사

아부다비의 위생검사(Health Clearance)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입업자 또는 통관대리인이 필요한 정보와 인삼제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아부다비 관세청 홈페이지(www.auhcustoms.gov.ae)에 접속하여 자동통관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통관원이 제출된 정보와 관련서류를 검증 후 통관신고서 수락과 동시에 위생검사 절차에 접근하고 완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동

- 수입업자 또는 통관대리인은 위생증명서 및 수입하고자 하는 인삼제품과 관련된 서류를 관할당국 식품검사원에게 제출
- 식품검사원이 수입식품 화물의 정보와 자료를 검증하면 위험도에 따른 범주별로 정해진 절차 수행
- 최초 수출 시 샘플 추출 및 실험실 분석이 불가피하며, 이후 지속적인 수출 시 인삼제품 특성에 따라 대부분 서류통과로 위생검사가 종료

■ 샘플검사

아부다비의 수입식품의 샘플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국경에서 검사원이 적색절차로 분류되는 샘플을 채취
- 식품의 수입물량에 관계없이 같은 날짜나 같은 배치로 생산된 단일 품목별 채취가 원칙
- 채취하는 샘플의 양은 관계기관이 반복분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함
- 채취된 샘플은 지정된 운송수단을 이용, 아부다비 식품청으로 이관된 후 검사
- 식품 수입업체는 결과에 불복, 재검사를 요청할 권한을 가짐

■ 식품 운송과 온도관리

아부다비 식품관리국의 식품 운송과 온도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식품 운송과정에 있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관리가 필요
- UAE에 수입되는 인삼 관련 제품 중 인삼 엑기스나 추출물 및 인삼 음료 등 냉장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아부다비 식품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5℃ 이하를 항상 유지해야하며 비냉장, 비냉동 식품이라 할지라도 제품 변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함
- 컨테이너 온도 기록 장치는 수출국가 국경에서 화물이 떠나는 날부터 수입 도착 시 까지 계속 가동

■ 라벨링

기본적으로 UAE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 (상품명) 식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해서는 안 됨
- (식품 원료) 함량에 따른 모든 원재료를 내림차순으로 표기
- (영양정보) 해당 제품이 특별식으로 제공될 경우 표기
- (순 중량) 유동식은 부피, 고형식은 무게, 반고형 혹은 점성식은 무게 또는 부피로 표기
- (업체 정보) 제조,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 명기
- (원산지) 식품 제조국가를 표기
- (제품정보(Lot)) 배치번호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 (보관 및 취식방법)
- (방사선 조사 여부)
- (추가정보) 기타 소비자에게 필요한 추가정보 기입이 가능하
나 쉽게 지워져선 안 됨

UAE 라벨링 규제의 준거표준인 포장식품의 라벨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공식품의 라벨에는 다른 식품과 혼동을 야기하거나 또는 다른 식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표현, 기술을 할 수 없음
- 포장식품의 라벨에는 식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 없음
- 품질이나 유기농 제품처럼 특별한 로고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함
- 품질경영시스템 QMS와 관련된 문구, 로고 또는 상징은 쓸 수 없음

할랄식품의 요건을 근거하는 UAE.S/GSO2055-1:2015는 할랄식품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일반적 요건, 포장, 판매, 유통, 보관, 운송, 라벨링을 규정하고 있다. UAE 포장식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UAE.S. GSO9: 2013)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하기의 내용을 따라야한다.

- 제품의 종류와 이름
- 성분표: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금지품목은 포함될 수 없음
- 라틴, 레닛 등 지방, 유지, 육류 부산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경우 출처를 명기
- GMO 포함 여부
- 할랄식품 표식을 부착할 경우 GSO2055-2 준수
- 도축한 가축과 육류의 경우 GSO993 준수
- 식품첨가물의 경우 GSO9 준수
- 비늘이 있는 수산물(새우 및 그 알과 부산물은 비늘이 있는 수산물), 아널 경우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별도 표기

기타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품의 식품첨가물 목록 또는 숫자코드 국제 분류 체제 또는 유럽 지수가 그 기능명칭과 함께 표시
- 겔프 표준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기능명칭을 특정 첨가물명 또는 국제번호 옆에 기재
- 식품첨가제로 허용되는 향료의 경우, ‘natural(자연의)’, ‘natural identical(자연과 동일한)’, ‘artificial(인공)’ 향료로 기술될 수 있음
- 상당한 양의 첨가물이 들어가 기술적 기능 작용을 하는 경우 성분목록에 포함
- 첨가물이 기술적 기능을 성취할만한 수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성분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

- 동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물원천을 표시
- 중량이 100g 또는 100ml 미만인 경우 모든 영양정보 또는 순 내용물은 비율로 표시
- 필수기재사항의 면제: 최대표면 면적이 1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성분, 배치생산번호, 유효기간, 영양정보는 면제할 수 있음
- 라벨은 아랍어로 기술해야하며, 다른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려면 아랍어 옆에 기재하며 동일 정보를 담아야 함
- 라벨에는 추가문구도 가능하지만 필수 기재사항과 상호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약효나 치료와 관련된 문구는 허용하지 않음

■ 규제 미준수시 조치 사항

아부다비 정부는 아부다비 국경 통제를 통해 수입식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규제 준수 시 인센티브나 미 준수 시 페널티 부여한다.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같은 식품 종류로 분류되거나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반입된 5개 컨테이너가 서류 검사와 화물 검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샘플채취 및 실험실 검사는 하나의 컨테이너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반입하려는 식품 컨테이너가 위생검사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 조치가 철회된다.

UAE 내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통관절차 개시 없이 국경에서 수출국으로 반송된다. 또한 아부다비로의 최초 수입이거나 규정의 미 준수, 다른 국가나 관련 국제기관으로부터 반입금지

조치되었거나 서류 미비, 샘플 분석 결과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화물이 일시적으로 억류될 수 있다.

■ 화물의 압수 및 반출

하기의 위반사례 발생 시 관계 기관은 화물의 압수 혹은 반출, 보증금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식품라벨 정보 부정확, 비상업적 개인용도의 수입,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 누락 혹은 자격미달 등 관계 규정 위반
- 특히 할랄증명서, 위생증명서가 누락되었거나 인간이 취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수입국으로 반출

규제기관은 화물을 억류하고 수입업체에게 관련 증명서나 보증금 제출 등의 추가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추가 조치에 수반되는 행정적 절차와 재정적인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제 6 장

인삼 관련 의약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 가. 의약품 승인
- 나. 수입허가
- 다. 수입면허 요건

6

인삼 관련 의약품 통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의약품 승인

UAE 인삼류의 주요 제품인 인삼 타블렛 혹은 캡슐 형태의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식품과 달리 사전에 보건국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UAE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의 의약품통제국(Pharmaceutical & Medicine Control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UAE 보건당국은 공식 현지 대리인에게 등록 승인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UAE 정부는 국제제조규격(International Manufacturing Standards)에 맞춘 제품을 선호하며 미국의 FDA승인이나 유럽의 제조 라이선스 없이 UAE 내에서 의약품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인증서를 취득해야 의약품 승인을 받는 데 유리하다.

-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FDA)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EFSA)
- GCC Specs

의약품 승인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로 의약품 승인 신청서를 보건부에 제출하면 필요서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1차 검토 과정을 거친다. 2단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해 안정성, 성분분석, 라벨링, 행정, 안전성의 5개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친다. 3단계로 기술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나. 수입허가

보건부와 세관은 보건부 의약품통제국의 승인이 없으면 UAE에 허용되지 않는 의약 제제와 실험 시약, 화학약품의 수입을 위해 협력한다.

Circular No. 11 of 2007은 회사가 제품 제조에 관련되는 유효 성분에 요구되는 적합성 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약품이나 유효 성분(국내 제조사용)의 수입을 제한한다.

수입업자는 보건부의 의약품통제국에 등록된 약국(대표 대리인)에 한하여 의약품을 수입 할 수 있다. 약국은 보건부 의약품통제국에 등록하고 수입 후에 의약품 취급을 담당할 담당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다. 수입면허 요건

1) 등록 의약품

- 수입면허 신청서
- 제조 또는 시판 허가 보유자의 송장 및 포장 목록 사본 3부
- 통제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공인된 향정신성 면허나 마약류 수입 허가
- 혈액 제제의 경우, 보건부 의약품통제국이 발행하는 배치 공개 증서 사본
- 송장 원본과 분석증명서 원본(COA)은 통관 항만에 제출

2) 비등록 의약품

- 수입면허 신청서
- 제조사나 도매업자의 송장 사본 3부
- 통제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공인된 향정신성 면허나 마약류 수입 허가
- Circular 73/2001 에 따라 현지 구매주문서 및 서한 사본 1부
- 국내 구매자의 신고서
- 관련 약학 및 임상 데이터
- 혈액 제제의 경우, 보건부 의약품통제국이 발행하는 배치 공개 증서 사본

- 송장 원본과 분석증명서 원본(COAT)은 통관 항만에 제출
- 도매 면허 공인 사본

3) 샘플

- 수입면허 신청서
- Invoice 사본 한부
- 공인 향정신성 면허
- 송장 원본은 통관 항만에 제출



제 7 장

UAE 인삼시장 특성

UAE 인삼시장 특성

가. UAE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인삼제품 시장은 초기단계

개척단계에 있는 중동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삼의 효능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약사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인삼 업체들은 현지 유통사 접근 시 인삼의 효능, 기능성 위주로 마케팅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건강식품 및 보양식품 시장이 오랫동안 발달해온 한국 및 아시아 시장과는 달리 중동 소비자들은 최근부터 건강식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막연한 신뢰를 가지기 보다는 제품의 기능을 고려 후 합리적으로 구매를 결정을 하는 편이다.

나. 기능성이 중요시 되는 중동 건강보조식품

한국 시장과 달리, UAE 소비자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건강보조식품 보다는 비만개선이나 특정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프리미엄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UAE 소비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단순한 단일 기능의 건강식품보다는 비만개선이나 특정 기능을 포함한 복합 기능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UAE 소비자들의 높은 구매력과 프리미엄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성장

UAE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소비자는 중산층 이상의 남성이며, 이들은 프리미엄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을 중요시하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따라서 이들은 대중성 있는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인삼제품과 같이 도입기에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인삼제품의 적합한 타겟 고객으로 판단된다.

라. 마켓리더는 없으며 브랜드별 점유율 비슷

많은 유통사들은 다이어트 관련 하이엔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인삼제품의 경우 UAE 시장 내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된 제품은 없다.

또한 현지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인삼 관련 제품 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이 높지만 브랜드별 점유율은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제품 충성도도 낮다. 따라서 UAE 인삼제품 시장이 도입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는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 보다는 프로모션 및 판매촉진 등의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 인삼 업체들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시, 적합한 제품 포지셔닝과 가격책정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를 확보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인삼제품 시장의 성장기 및 성숙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원산지보다는 인삼의 함유량을 중시하는 소비자들

한국 인삼제품이 다른 국가의 제품보다 품질 면에서 뛰어나지만, UAE 소비자들은 원산지 보다는 인삼의 함유량을 더 중요시하여 한국 인삼제품의 장점이 어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산 인삼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산 인삼제품은 함유량이 한국산 제품보다 비교적 높고, 소비자들 또한 이러한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 인삼업체는 현지 유통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국 인삼의 품질이 중국산이나 미국산 보다 뛰어남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8 장

UAE 진출 시 유의사항

UAE 진출 시 유의사항

가. 유통업체 선정

1) 드러그스토어 중점의 유통채널 개발

UAE의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주요 유통채널은 드러그스토어가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에 이어 슈퍼마켓/하이퍼마켓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UAE 드러그스토어 관계자는 홍삼제품이 UAE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것을 감안하여 식품형태의 인삼초콜릿 혹은 인삼스낵 같은 제품들은 아직 시장에서 흡수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슈퍼마켓/하이퍼마켓 등의 유통채널은 홍삼제품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중동 내에서 인삼의 인지도가 상승하여 인삼이 UAE 소비자들에게 대중화 된다면 상품의 종류 및 유통채널의 다각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의 소비자의 건강보조식품 구매경로 및 동향을 비취볼 때 드러그스토어 및 약국을 통한 유통이 가장 적절하다.

2) 인삼제품이 없는 드러그스토어를 공략

현재 소수의 유통업체들이 한국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현지 유통업체 조사결과 타블렛 형태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인삼제품의 브랜드나 제품 면에서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UAE 내의 인삼 시장규모가 아직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인삼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할랄인증을 받은 경쟁력 있는 한국 업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국내 수출 희망 업체들은 UAE 인삼 관련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유통업체의 관심증가를 고려하여, 향후 인삼제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고 있는 유통파트너를 중심으로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매장 규모보다는 점포수가 많은 유통업체

인삼제품이 아직 UAE 시장 내에 도입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케팅, 프로모션을 통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많은 유통 파트너가 적합하다.

따라서 단순히 단일 매장의 규모가 큰 유통파트너를 주요 협력 타겟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고객의 구매 편의성 및 접근성에 예 중점을 둔 유통망을 가진 파트너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타 중동국가에 진출하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유통업체

UAE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 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는 파트너와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동 내 타 국가 수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잠재 파트너의 해외 유통망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삼제품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UAE의 주변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국가의 식품수입 규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넓은 유통망을 가진 대중적인 드러그스토어 혹은 프리미엄 드러그스토어

현지 드러그스토어는 크게 UAE 또는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로컬 유통업체와 영국 또는 유럽에서 진출한 해외 유통업체로 분류된다.

현지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로컬 유통업체와 해외 유통업체들의 제품군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해외 유통업체들은 하이

엔드 제품군 위주로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고, 소비자들도 해외 드리그스토어를 프리미엄 유통채널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임을 고려 할 때 프리미엄 포지셔닝에 해당하는 드리그스토어와 유통채널 확립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UAE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산 제품이라는 특성만으로도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될 수 없으며, 한국 인삼 업체들은 적절한 인삼 함유량, 프로모션, 패키징 등 현지 유통사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지속 협력 가능한 유통업체

현재 인삼 시장은 규모면에서 다이어트식품이나 비타민 같은 타 건강보조식품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유통업체와 협력하고 인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UAE 주요 드러그스토어 및 약국

BinSina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 관련 제품
점포수	75개
홈페이지	www.binsina.ae
매장 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The image shows the entrance to a BinSina Pharmacy store with its logo and name in Arabic and English. To the right of the entrance are two bottles of ginseng products: a white bottle of 'Ginseng & Royal Jelly' capsules and a dark bottle of 'Ginseng Complex With Royal Jelly 1000mg' capsules.
주요 특징	- 1965년 설립된 두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드러그 스토어 체인점으로 UAE내에 총 75개의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유통사 - 제약회사 Alphamed와 자매회사로, BinSina는 주요 유통채널의 기능을 하고 있음 - 2017년까지 매장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120개까지 확장할 계획 -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삼제품은 캡슐 형태의 보조식품이며 종류가 매우 제한적임 - 한국 인삼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품질,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수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확인

Dr. Nutrition	
주요 상품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
점포수	50개
홈페이지	www.drnutrition.com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2001년에 설립된 대형 드러그 스토어이며 일반 다이어트 및 지방 분해 식품 판매를 중심으로 두바이뿐만 아니라 중동 9개 국가에 약 90개의 점포 및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 중임. - 현재 750여 명의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같은 식 이조절을 희망하는 고객은 Dr. Nutrition 영양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인삼근, 인삼음료, 인삼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삼제품들을 판매중이며 한국인삼제품은 KG(경기인삼연합사업단)이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로 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들과 차별화됨.

Life Pharmacy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 관련 제품 , 홈케어 제품 등
점포수	150개
홈페이지	www.life-me.com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15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확장 및 24시간 운영 등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음. -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약품 소매 체인점으로 2018년 까지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점포수를 300개까지 늘릴 계획임. - 한국 인삼 추출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미국산 제품을 판매중이며 인삼제품 브랜드가 제한적임.

Life Pharmacy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 관련 제품, 홈케어 제품 등
점포수	150개
홈페이지	www.life-me.com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1996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15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확장 및 24시간 운영 등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두었음. -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의약품 소매 체인점으로 2018년 까지 대형 할인마트를 중심으로 점포수를 300개까지 늘릴 계획임. - 한국 인삼 추출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미국산 제품을 판매중이며 인삼제품 브랜드가 제한적임.

Aster Pharmacy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 관련 제품, 유아용품 등
점포수	300개
홈페이지	www.asterpharmacy.com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Aster DM Healthcare의 자회사로 1989년에 설립되어 현재 약 3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조단 등 중동에서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장중임. - 미용 관련 제품에 중점을 두고 건강 뷰티 드러그 스토어로 포지셔닝 하고 있는 유통업체로서 건강보조식품의 선택 범위는 경쟁사 대비 작은 편임. -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인삼제품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 인삼제품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확인됨.

Super Care Pharmacy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점포수	70개
홈페이지	www.super-care.ae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1978년에 설립되어 약 70개의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제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현지 드러그 스토어임. - Super Care와 Good Health Nutrition 이라는 두 개의 상호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Super Care는 의약품을 Good Health Nutrition은 건강보조식품을 다루고 있음. - 현재 인삼제품은 주로 미국산 제품을 브랜드로 제한되어 있으며 경쟁력 있는 아시아 인삼제품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Al Manara Pharmacy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다이어트 식품, 미용 관련 제품
점포수	60개
홈페이지	www.almanarapharmacy.com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1988년에 설립되어 약 60개의 드러그 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서비스에 중점을 둔 유통업체로 직접 전문가들이 매장 방문 고객을 개인 상담실에서 컨설팅 해주어 고객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줌. - 테일 혁신을 강조하는 회사로서 고객에게 필요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강조함 - 구매 담당 관리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삼제품은 없지만 기능이 강조된 경쟁력 있는 인삼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Holland & Barrett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스포츠 및 다이어트 식품
점포수	23개
홈페이지	www.hollandandbarrett.ae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1870년대 설립된 유명한 영국계 프리미엄 건강보조식품 전문 유통 기업으로, UAE내에 아부다비와 두바이 쇼핑몰 중심의 2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 인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인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타블렛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구매담당 관련부서는 기업 판매 전략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한국산 인삼제품을 수입할 의향이 있으나 영국 본사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거쳐 제품 경쟁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함.

Boots	
주요 상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 관련 제품
점포수	12개
홈페이지	www.me.boots.com
매장전경 및 인삼제품 현황	
주요 특징	- 영국의 유명 드러그 스토어로 UAE 내에 12개의 매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프리미엄 뷰티 관련 제품으로 유명함 - 중동 시장에서의 의약품 및 건강식품 관련 시장을 주목하고 UAE 내에 꾸준히 매장 수를 늘릴 계획임. - 인삼제품을 판매 중에 있으나 제품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구매 관련 담당자는 인삼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Boots 사에서 관심있게 보는 제품은 아니나 최근 성장세에 힘입어 품질이 좋은 프리미엄 제품은 수입 고려 대상이라고 조언함.

나. 할랄인증

한국의 한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제품의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UAE 수출을 위해 바이어를 물색하고 관심이 있는 현지 바이어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

이후 할랄인증서 발급과정에서 미량의 돼지고기 성분이 검출되어 돼지고기 성분을 대체하는 소스를 이용하여 수출을 성공시키려 했지만 바이어의 변심으로 UAE 진출은 실패로 끝났다.

UAE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는 할랄인증서가 사전에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돼지고기나 알코올로 성분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산 인삼 타블렛의 경우, 젤라틴에 돈육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농축액 제품에는 추출과정에서 알코올 사용하여 할랄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UAE 소비자의 경우, 비 이슬람 국가로부터 수입된 식품이 비 할랄일 수 있다는 막연한 의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할랄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랄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방법이며 그 과정에서 현지 바이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수입식품의 UAE 할랄인증 획득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약 3개월이 소요된다.

- ESMA 웹사이트 접수
- ESMA의 서류심사 및 제조업체 실사
-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수여

할랄인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다.

- 온라인 지원서
-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
- 원재료 성분목록 및 원재료 할랄증명서
- 제조공정 설명서, 라벨디자인
- FSMS, GMP, GHP or QMS증명서
- 수수료

[대한민국 주변국 할랄인증서 발급 기관]

연번	소재국가	기관명
1	중국	China Islamic Association Shandong Islamic Association China
2	태국	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3	싱가포르	Majlis Ugama Islam Singapura - Islamic Religious Council of Singapore
4	일본	Islamic Centre of Japan Japan Islamic Trust
5	말레이시아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KIM)
6	인도네시아	Majelis Ulama Indonesia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7	필리핀	Islamic Da'wah Council of the Philippines(IDCP)
8	대만	Taiwan Halal Integrity Development

* 출처 : 각국 할랄인증기관

다. 알코올 성분

한국의 한 음료기업은 홍삼 엑기스 및 음료를 할랄인증 취득 후 현지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했고 제조과정에서는 알코올을 첨

가하지 않았으나 유통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발생하여 UAE 내에서 폐기된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라. 통관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신선도 문제

인삼제품의 유형에 따라 신선도의 중요성이 다를 수 있지만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삼 엑기스나 추출물 등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갈 수 없어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신선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인삼관련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한 업체의 경우 현지 바이어에게 주문받고 납기일에 맞춰 수출 절차를 개시하였고 현지 바이어는 선적 전에 업체를 실사하고, 제품의 신선도까지 확인하였으나 최초 수출이었던 제품의 특성 상 현지 통관 및 검역과정에서 화물 인도가 지연되는 상황 발생했다.

UAE처럼 50도를 넘나드는 고온의 환경에서, 화물 인도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경우, 바이어들은 이러한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온의 기후에 적합한 포장방법을 개발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 거래선 발굴시 해당업체 신뢰도 평가 필요

두바이에서 활동하는 수입상이 복수의 국내 기업으로 수출환어음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으로 수만 달러 상당의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물건을 인수한 업체는 이를 판매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회사하고,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들여온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UAE에서는 회사설립과 폐쇄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가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사업자등록(Trade License), 은행거래내역, 이전 수입거래 내역 입수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UAE 인삼제품 수출실무가이드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아부다비지사

발 행 일 : 2017년 11월

발 행 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자 료 문 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k.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및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